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는 국제법적으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적권리의 행사

박 희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단행본 91폐지)

오늘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에 기절초풍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려고 발광하는 한편 수소탄보유 를 문제시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는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 적권리의 행사이다.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가 국제법적으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적권리의 행사로 되는 는것은 우선 그것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자위권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기때문이다.

국가는 국제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자주독립권, 평등권 등과 함께 자위 권을 가진다. 자위권은 다른 나라의 침략과 위협을 물리치고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 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리이며 모든 국가가 다 행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유엔헌장》제51조에서는 모든 성원국들은 무력공격이 발생되였을 때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무장공격을 반대하여 국가들이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는것은 1949년에 채택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선언》제12조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자위권행사를 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규정한 국제법규범들은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자위권행사의 시점을 무력공격이 발생되였을 때로 국한시키고있는것 이다. 다시말하여 국가는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 즉 침략을 받은 다음에야 자위권을 행사 할수 있다는것이다.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 침략을 받은 다음에야 자위적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러한 국제법규범은 신속성과 타격력, 파괴력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전쟁의 양상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된다.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핵으로 공격을 가한 후에만 공격받은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면 그러한 자위적조치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바로 여기로부터 세계의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은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규범들에 반영된 자위권행사의 시점과 관련하여 국가는 다른 나라에 의한 무력공격이 발생되였을 때는 물론 극도의 무력공격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급박한 경우에도 자위 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극도의 침략위협을 받는 국가가 취하는 모든 형태의 정당방

위조치는 자위권행사로서 국제법상 합법적이며 무력공격의 위협이 더는 용인할수 없는 최악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는 70여년동안 지속되여온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정 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이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의 대상명단에 올린지 오래며 공화국에 대하여 반세기이상이나 핵선제공격의 위협을 가하여왔다.

1950년대 후반기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실전배비하는것으로 핵문제를 유발시킨 미제는 남조선을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진 거대한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의 핵무기배비밀도는 나토지역의 4배이상에 달하고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1 000배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킨데 기초하여 새 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명단에 올려놓고 《사전경고》없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북침핵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극도의 핵위협을 가하여왔다.

미국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기도가 극한점에 도달한 엄중한 정세에서 공화국은 나라 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 세차례의 지하핵시험에 이어 수소탄시험을 하고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였다.

국제법상 합법적인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떠한 행위이든지간에 책임을 추궁할수 없다.

2001년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에서는 《어느 한국가의 행위가 만일 〈유엔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적조치라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은 배제된다.》라고 함으로써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을 자위권행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들과 서로 련관시켜보면 결국 극도의 핵 위협을 받는 국가가 핵억제력을 확보하는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자위적조치로 되며 그 리한 핵억제력보유조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국제법상 정정당당한 우리의 핵보유, 수소탄보유를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면서 또다시 우리 나라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수소탄을 포함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핵전쟁방지의 유일무이한 수단이며 우리 나라가 미제의 핵위협이 없어지기 전에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대국들만 핵무기를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가져서는 안되며 저들이 핵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둘러대고 핵선제공격을 기도해도 다른 나라들이 그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갖추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날강도적인 론리가 아닐수 없다.

핵무기의 소유나 핵선제공격은 결코 특권국가,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로 될수 없으며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것이야말로 국제법에 부합되는 가장 적극적인 자위적조 치, 정당방위조치로 된다. 우리의 수소탄보유는 철저히 날로 가증되는 미제의 핵위협에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조치이며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는 국제법상 합법적권리의 행사이다.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가 국제법적으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적권리의 행사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을 비롯한 핵보유의 금지와 관련한 그 어떤 국제법적의무도 지닌것이 없다는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은 해당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가입한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법에 관한 원협약》제26조는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그의 당사국들을 구속하며 당사국들은 이것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 든 국제조약은 비당사국 즉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국제조약이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것은 결국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 거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해당 국제조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것 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은 오랜 기간 우리에게 가해지는 미제의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을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투쟁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공화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일련의 쌍방조약들을 체결하였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핵무기금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제조 및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와 체결한 조약들을 어느 하나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 로괄적으로 배신함으로써 공화국정부가 조약에서 지닌 자기의 의 무를 도저히 리행할수 없게 만들고 조약을 무효화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이미 가입하였던 국제조약들에서 탈퇴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1993년 6월 11일에 채택된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 10월 21일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에서는 체약쌍방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뿐아니라 핵으로 위협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것을 확약하였다.

공동성명과 기본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흑연 감속로를 동결시키고 미국선박과 상품의 입항 및 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였으며 미국이 의혹을 가지고있던 《지하핵시설》까지도 공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한 사항들을 어느 한 조항도 리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합의문들을 로괄적으로 파기하는데로 나아갔다. 미국은 전력손실보상의무를 어느 정도 리행하는척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중지하였으며 핵위협의 금지의무를 배반하고 오히려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는것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더욱 강도높이 감행하였다.

《조약법에 관한 원협약》제60조 1항에서는 한 당사국에 의한 쌍방조약의 근본적위반은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종결 또는 정지할수 있는 근거로 삼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조약을 체결한 쌍방국가들중 어느 일방이 조약상의 의무리행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체약타방은 그 조약의 효력을 없앨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저들의 의무는 애당초 리행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만 의무리행을 일방적으로 강요 하는 미국의 배신행위와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 핵압살책동에 의하여 결국 조미사이에 체결된 국제법적문건들은 그 효력이 소멸되고 우리 나라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사이에서 그 어떤 의무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의 금지와 관련한 국제다방조약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그 어떤 국제법적의무도 지닌것이 없다.

원래《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비핵국가들의 핵보유는 금지하고 미제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시험이나 생산, 전개 등 핵활동의 금지문제는 규정하지 않고있는 불평등조약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데로부터 주체74(1985)년 12월《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가입국이 된 후 공화국은 많은 평화발기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조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였다. 주체81(1992)년 4월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핵무기철수, 핵위협의 중지와 법적인 안전담보공약 등을 전제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도 허용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은 다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참가한 국가로서 조약상의 의무를 동시에 리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상의무를 근본적으로 리행하지 않고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사찰이 기구의 규약과 담보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정탐활동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종하였는가 하면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까지도 강요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엽부터 우리의 평화적핵시설들에 대한 기습적인 《외과수술식타격》을 준비하였으며 남조선에 축적, 배비되여있는 각종 핵무기를 철수시키기는 커녕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까지도 끌어들이는 등 조선반도를 저들의 핵무기고로 완전히 전변시켰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식화하고 3대핵전략타격수단들까지 총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것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근본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제10조 1항에는 《각 체약국은 이 조약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특수한 사태가 자기 나라의 최고의 리익을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가입국이 다른 국가에 의하여 이 조약의 대상 즉 핵문제로 인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조약에서 탈퇴하며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지니지 않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조약상의무를 더는 리행할수 없게 되였고 나라와 민족의 자 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체92(2003)년 1월《핵무기 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완전히 탈퇴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은《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국제법상의무를 더는 리행하지 않게 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다.

현재 국제무대에는 1963년에 채택된 《대기,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시험을

중지할데 대한 조약》과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도 있다.

그러나 《대기,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시험을 중지할데 대한 조약》에서는 지 하핵시험을 금지하지 않고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형태의 핵시험을 금지 하고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핵대국들이 아직까지도 정식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발 생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어느 국가도 아직 이 두개의 조약에 따르는 포괄적인 핵시험금지의무를 지니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미국과 같은 핵렬강들은 조약밖에서 핵무기 고, 핵병기고를 끊임없이 확대갱신하면서 비핵국가들을 핵으로 부단히 위협하고있다.

현실은 핵시험 및 핵보유의 금지와 관련한 이러한 조약들이 미국을 비롯한 핵렬강들 을 전혀 구속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조약의 원래 목적을 전혀 달성할수 없는 유명무실 한 조약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해당 조약들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조약들에 근거 하여 우리의 핵시험과 수소탄보유를 문제시할 국제법적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보유가 국제법적으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적권리의 행사로 되 는것은 또한 그것이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담보조치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유엔헌장》과 1949년의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 1970년에 채택된 《유엔헌 장에 부합되는 국가들사이의 우호 및 협조에 관한 국제법적원칙에 관한 선언》들을 비롯 하여 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은 그것을 담보할수 있는 국제질서가 수립되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구현될수 있다. 때문에 새롭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하여 매개 국가에 부여된 국제법적권리로 된다.

2012년 8월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 일 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 이 토의된것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무대에는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떠나 미국을 비롯한 렬강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만 부합되는 낡은 국제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그러한 낡은 질서 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다름아닌 《핵질서》이다.

미국을 비롯한 핵렬강들에 의하여 1960년대부터 확립되여온 《핵질서》는 핵무기는 저 들만이 가지고 일체 다른 나라들은 가지지 못하며 비핵국가들은 오직 핵국가들의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패권적인 《세계질서》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핵렬강들은 저들의 대국적지위를 영원히 고수하기 위하여 날강도적인 《핵질서》를 마치도 불변적인 《국제질 서》인듯이 묘사하면서 그에 도전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련합하여 악랄한 압박공세를 가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이러한 불공평한 《핵질서》에 의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돈 과 기술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감히 핵보유를 생각조차 못하게 되였으며 핵우세에 기 초한 미국의 세계지배책동에 머리를 숙이고 자주적존엄을 버리게 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불평등한 국제조약들에 의하여 확립된 강권적이며 패권주의적인 《핵질서》에 의하여 새롭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들의 국제법적권리는 무참히 유린당하게 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은 허울 만 남게 되였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생활질서가 허물수 없는 국제관계로 굳어져있으며 절대다수 나라들이 이를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습관되여있는 세계, 특정한 핵보유국들이 과반수나라들을 침략, 략탈하고 억압하는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이 지금까지의 국제정치사가 남긴 중요한 교훈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압력속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우리 공화국의 핵시험과 수소탄보유는 바로 핵대국들이 공고하게 다져놓았던 불공정한 《핵질서》에 통구 멍을 내고 새롭고 정의로운 국제질서수립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수소탄을 비롯한 공화국의 핵무기보유로 하여 미제가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핵우세에 기초한 강권정치질서, 패권정치질서에는 파렬구가 나게 되였으며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더욱 추동할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물리적인 담보가 마련되였다.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를 계기로 하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적으로 깨버리기 위한 전세계적인 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가 수립한 핵지배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길로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공화국의 수소탄보유야말로 국제법적으로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는 합법 적권리의 행사, 자주적인민의 주권행사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적대감이 골수에 사무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 수소탄보유만을 특별히 문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 이고있다.

70년이 넘는 유엔력사에 지구상에서 무려 2 000여차례의 핵시험들이 진행되였지만 핵렬강들은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대국들은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저들의 핵무기현대화는 합법으로 자처하고 추종국가들의 탄도미싸일개발에 대하여서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가하는 미제의 제재, 압박책동은 모든 국가는 정치, 경제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요구와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에 대한 로괄적인 위반으로 된다.

우리는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적투쟁을 더욱 주동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야 할것이다.